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안」이 2012년 3월 12일 최미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명의 조례안이 2012년 3월 19일 김양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안 제3조)
- 조사연구 의무화(안 제5조)
 -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한부모가족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9조)
 - 위원장(행정부지사)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0조)

2.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사연구 의무화(안 제5조)
 -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안 제6조)
-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제10조)
 - 구성: 위원장(행정부지사)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기능: 지원계획, 실태조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심의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이라는 동일 제명으로 회부된 상기 2건의 제정안(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안,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충청도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도의 한부모가족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안별 주요 내용

상기 조례안은 모두 ①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② 3년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③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④ 한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비교표와 같습니다.

다. 종합의견

상기 2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제안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의 실시, 위원회 구성·운영, 한부모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수렴하되 입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기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붙임

1.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2.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조례안 비교표

내 용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안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안	비고
목 적	제1조	제1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정 의	제2조	제2조	-법 제4조, 제5조의2, 제19조에 따름
지 원 대 상	제6조	제3조	-충북도내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함
도 지 사 의 책 무	제3조	제4조	-한부모가족 지원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 함
지 원 계 획	제4조	제6조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
조 사·연 구	제5조	제5조	-3년마다 실태조사와 공표 의무화 함
지 원 사 업	제7조	제7조	-가족지원서비스, 의료 보건 서비스 지원 등
위 원 회 설 치·구 성	제8조	제9조	- 9인 이내(최미애 의원 발의안) - 15인 이내(김양희 의원 발의안)
위 원 회 협 의 회 기 능	-	제8조	- 실태조사, 지원계획,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심의
수 당·여 비	제9조	제10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
한부모가족 지 원 센 터	제10조	제11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해 명시함